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8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7.

발 의 자 : 정동만 · 구자근 · 안철수
이양수 · 박상웅 · 김선교
이종배 · 이인선 · 김용태
김위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,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,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,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·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·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

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추진을
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제6호의2 신설).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의2.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·활용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부 등의 책무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③ (생 략) 제5조(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 획의 수립) ① (생 략)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 7. ~ 9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	제3조(정부 등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 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 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u> 제5조(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 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6의2.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·활용에 관 한 사항</u> 7. ~ 9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